

瑞山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9. 12. 22
總務委員會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9. 12. 14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12. 16

라. 上程日字 : 1999. 12. 22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 稅務課長 安光來)

가. 提案理由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세제지원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24조의1)
 -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전액면제 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여,

-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시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기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면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는 추징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임.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에 대하여 지방이전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 '99.10.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별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26 호
의결년월일	1999.12.24 (제 47회)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12. 14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
----------	-----

제출년월일 : 1999. 12.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세제지원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안 제24조의 1)
 -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며,
 -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시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기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면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는 추징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안(세정13400 -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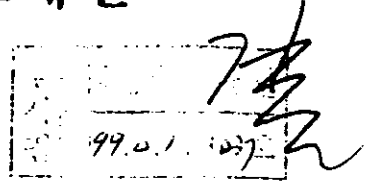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99.11.10 ~ '99.11.29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접수사실 없음

라. 합의·협의 :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2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서산시 관할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서산시 관할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4조의 1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서산시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u></p> <p><u>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제1항에서 서산시 관할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